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 - 196호

『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8월 9일

중소기업청장

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□ 최근 언론 보도* 등으로 인해 벤처투자시 발생하는 벤처캐피탈의 불공정행위가 이슈화되고 있으며,

* 관련기사 : (매일경제 '13. 3. 11) A01면 “캐피탈 횡포에 아마추어창업 좌절”, A03면 “일부 VC 3년내 상장 못하자 연이자 8% 붙여 투자금 회수”

○ 국회에서도 벤처캐피탈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 체계적인 현황 파악과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*

* '13. 4. 9, 오영식 의원(국회 산업부 업무보고)

□ 현재 벤처캐피탈 불공정 행위 차단을 위해 벤처캐피탈 제재 강화,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,

○ 추가적으로 주요 불공정행위로 지적되고 있는 투자금 조기 회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표준규약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

2. 관련근거
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

3. 주요내용

□ 조합 투자시 벤처캐피탈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 (안 제30조제5항)

- 경영지표 변동 및 IPO 실패 등을 이유로 투자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투자금을 조기회수하는 행위를 금지
- 투자계약 만기 전에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상환 준비기간 부여 의무화
-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과도한 가격 조정 금지
- 프로젝트 투자시 원금 보장 요구(프로젝트 투자를 신주 인수 등과 연계하여 투자하는 행위)를 금지

4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

5. 공고방법 : 홈페이지(<http://www.smba.go.kr>)

6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(벤처투자과)으로 방문, 우편,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제출내용
 -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,반 여부와 그 이유)
 -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 - 기타 참고사항
- 제출처 : 중소기업청(벤처투자과)
-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
 - 우편 : 302-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(문산동)
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
 - 팩스 : 042-481-4418
- 문의 :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(042-481-4422)
-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0조(투자의 방법) ① ~ ④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0조(투자의 방법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⑤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업체와 투자계약을 체결·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u>1.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와 관련된 지표의 하락이나 국내 주식시장 상장 실패 등을 이유로 투자계약 기간 만기 전에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행위</u><u>2. 투자금 조기회수 가능 사유로 인해 투자계약 만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통보 후 최소 2개월 이상 투자업체에게 상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. 단, 투자업체와 합의할 경우 상환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.</u>

현 행	개 정 안
<p data-bbox="236 562 403 600"><신 설></p>	<p data-bbox="834 338 1406 607">3. <u>국내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최초 계약시 정한 주식 가격을 30% 이상 조정하는 행위</u></p> <p data-bbox="834 636 1406 1346">4. <u>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규 인수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투자 대상을 사실상 프로젝트투자(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(중기청 고시 제2013-6호) 제7조의2에서 규정한 투자)로 한정하거나 프로젝트투자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을 받는 형식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</u></p>